

급식 공급 계약서

신원사외영원 (이하 "고객사")와 (주)올바른(이하 "(주)올바른")는 고객사를 구매자로 하고, (주)올바른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상호협조)

1. 고객사와 (주)올바른은 본 계약을 준수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발주)

1. 고객사는 필요한 급식을 납품 1일전(D-1,오전시)전까지 (주)올바른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고객사의 납품요청일까지 급식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주)올바른은 이를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급식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 하도록 한다.

제4조 (납품 및 규격)

1. (주)올바른은 고객사가 발주한 급식을 고객사가 요청한 장소에 납품 하도록하고 납품 시간은 고객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납품주기는 매 끼니별(주말포함) 배식시간전 납품하고 급식 구성항목은 일반식, 죽식(갈음찬)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3. 규격(중량)기준

종류	중량(1인)
밥	200g~250g
국	200g~250g
주찬	50g~65g
부찬	20g~45g

※중량기준은 메뉴별 상이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증량 할 수 있다.

제5조 (검식)

고객사는 (주)올바른의 납품 후 즉시 검식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실시한 검식에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올바른 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주)올바른은 이를 확인 후 고객사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응 한다.

제6조 (급식의 단가)

1. (주)올바른의 급식단가는 1식: 3000 원 / 간식1일: 1000 원 으로 하며, 물가상승 또는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단가를 변동할수 있다.

제7조 (대금 결제 및 지급)

고객사는 (주)올바른으로 부터 공급받은 급식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 정산하며 매월 말일(해당월) (주)올바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고객사 또는 (주)올바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 한다.
2. 고객사는 비밀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한다.
3. 고객사는 (주)올바른과 계약체결 후 동일업종(이동급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케 한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부도,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화의신청, 기업회생신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나.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 라. 거래대금을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기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급식 공급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원인을 발생케 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2. 계약해지 당시 이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귀책사유 없이 일방이 기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지시 기한의 이익금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단, 1개월이내의 해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text{*위약금} = \text{월 평균 매출액} * 5\% * \text{잔여개월수}$$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사와 (주)올바른의 상호 간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제11조 (비밀준수)

1. 고객사와 (주)올바른은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업무상의 비밀 또는 급식의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해석상의 이견이나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객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사와 (주)올바른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객사와 (주)올바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20년 10 월 28 일

고객사 *수원천사산업유한* 대표 *윤경자* (인)

(주)올바른 대표이사 김민준

